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 대상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받은 증권상장법인(이하 "회사"라 한다)
2.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III. 일반원칙

1. 회사는 주로 영위하는 산업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인에게 V.에 따른 산업전문성 기준을 갖춘 감사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회사는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에 IV.1.에 따른 회사의 산업 분류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에게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업종 분류가 IV.1.에 따른 산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산업이라고 판단한 산업 분류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
 - 나.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계약서에 IV.1.에 따른 회사의 산업 분류와 산업 전문가 참여 등 감사인과의 협의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에게 해당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할 수 없다.
 - 다. 회사는 「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할 때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2. 감사인은 산업전문성을 요구하는 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감사인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 회계법인의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에 IV.1.의 산업 분류 별로 V.1.에 따른 산업전문가 보유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IV.1.의 산업 분류 별로 V.1.에 따른 산업전문가 보유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기재하지 않은 해당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 나. 감사인은 회사와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유무 및 성명, 해당 산업전문가가 수행할 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계약 체결시점에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에 관한 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아 추후 보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산업전문가 보완시점 및 예정 수행업무 등을 감사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다. 감사인은 산업전문성을 요구한 회사가 감사 종료시 해당 산업에 관한 전문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라.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특정 산업에 관한 전문성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V.1의 산업전문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포함)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고, 소속된 산업전문가가 참여한 회사의 수를 관리하며 문서화하여야 한다.
- 마. 감사인은 감사에 참여하는 산업전문가가 이직, 휴직 등으로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산업전문가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산업전문가를 충원하여 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바. 감사인은 소속이 변경된 공인회계사가 당해 감사인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감사 또는 비감사용역 참여 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IV. 산업의 분류

1.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산업 및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에 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소분류 201(기초화학물질제조업), 192(석유정제품제조업)
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분류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라.	건설업 등 수주산업	·대분류 F(건설업), ·소분류 311(전박 및 보트 건조업), 312(철도장비제조업), 313(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 상기 분류된 업종 중에서도 수주산업 성격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수주산업 성격의 업종은 모두 포함
마.	운수 및 창고업	·대분류 H(운수 및 창고업)
바.	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업	·중분류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방송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소분류 612(전기통신업), 631(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	소프트웨어개발업	·소분류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은행 및 저축 은행업	·소분류 641(은행 및 저축기관)
자.	보험업	·소분류 651(보험업), 652(재보험업)
차.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소분류 642(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649(기타금융업) * 기업인수목적회사, 지주회사는 제외
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 M 중 중분류 71(전문서비스업) 제외 ·중분류 중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하나 소분류 739(그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는 포함

2. 회사는 주로 영위하는 산업의 분류를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업종 분류 또는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산업 분류는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의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개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V.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일반기준

1. 해당 산업의 산업전문가는 등록 공인회계사(등록 공인회계사란 「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의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최근 10년 이내 IV.1.의 각 목의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회사란 외부감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에 제공하는 감사 또는 비감사 용역에 200시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수습기간 중 이행한 시간도 포함} 이상 참여한 자
 - 나. 최근 10년 이내 IV.1.의 각 목의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회사란 외부감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다. 최근 10년 이내 금융기관 등에서 IV.1.의 각 목의 산업에 관한 분석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 라. IV.1.의 각 목의 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 마. 최근 3년 이내 IV.1.의 각 목의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관련 산업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 바. 가.의 감사 또는 비감사 용역에 100시간 이상 참여하고, 마.의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감사인은 회사가 속한 주된 해당 산업의 산업전문가를 포함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감사를 수행한 경우,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가. 감사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 기재한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는 회계감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배정하고, 관련 감사절차(입증감사, 중간감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는 감사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VI. 감사인의 산업전문가 미보유로 인한 감사인 재지정 신청

1. 회사의 재지정 신청

가. 회사가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지정받은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에 대한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감사인이 해당 회사에 대한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2. 감사인의 재지정 신청

가. 감사인은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또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산업전문가와 관련하여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재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사유서와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과 동일한 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와 지정감사 계약 체결 여부 등(체결하였다면 그 내역,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 입증자료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인은 IV.1.에 따른 산업 분류의 산업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산업 분류의 지정 대상 회사들에 대해서 산업전문가 미보유 사유로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산업 분류의 지정 대상 회사들에 대하여는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산업 분류의 산업전문가 수에 비해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회사 수가 많아 충실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